

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복지정책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

의안 번호	4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
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처우개선위원회 신설 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<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>

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기간: 2022. 9. 29. ~ 2022. 10. 19. (20일간)

2) 입법예고 결과: 의견없음

3) 부패/인권/성별/아동영향평가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
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6
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처우개선위원회)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
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
②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
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
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(처우개선위원회)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</u> <u>②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.</u>
<u>제6조 ~ 제10조 (생 략)</u>	<u>제7조 ~ 제11조 (현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</u>

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
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사업추진을 신설하는 사항으로
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2항 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4. 작성자

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장 임정선